

-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가 '11년 1~6월 기간동안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(안)을 심의한 결과,
 - 이통 3사에 대해 금지 행위의 즉시 중지·공표·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, SKT 68.6억원, KT 36.6억원, LGU+ 31.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.

[보고안건]

가. 『공익적 목적의 정보』 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 (첨부 참조)

- '11. 8.19. 개정된 시행령에 자막광고가 아닌 자막고지의 범위에 기존 방송사업자 명칭고지, 방송프로그램안내에 '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'를 포함함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〈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1호 '라'목 〉

자막광고(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,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을 이를 자막광고로 보지 아니한다. 이하 같다)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 고지시에 한하되, 그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,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,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(주)KT의 PCS사업(2G 서비스) 폐지 계획에 관한 사항 (별도 보도 자료 참조)

- KT가 PCS사업(2G 서비스) 폐지 승인을 재신청('11.7.25)함에 따라, KT의 PCS 사업 폐지 관련 절차, 승인 여부 등 처리방향을 보고함

※ KT는 '11. 4. 18일 2G 폐지 승인신청을 했으나, 이용자 수(81만명, '11.5월)가 많고 통지기간(3.28일~)이 짧아 승인이 유보됨(제37차 위원회, 6.24일)

※ KT 2G 이용자 수 추이: 110만명('11.3) → 81만명('11.5) → 34만명('11.8)

< 첨부 >

공익적 목적의 정보(고시) 제정안

□ 주요 내용

- ① 기존 방송프로그램내에서 고지하고 있는 정부시책, 민생정보 등 공익적 목적의 정보 안내에 대한 자막고지의 법적 근거 마련
 - 재난, 질병, 세무, 선거,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정보
 - 수도·가스중단, 성금모금, 긴급수혈 등 민생 관련 정보
- ② 방송사업자의 자막고지 관련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마련
 -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,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
 -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·주관 또는 후원하는 '공익행사'

□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'공익행사' >

- 문화예술(음악회, 연주회, 뮤지컬, 오페라, 무용, 콘서트, 판소리, 풍물, 창극, 마당놀이, 연극제, 영화제 등)
- 서화전, 미술전, 사진전 등
-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
- 스포츠 행사
- 교육관련 행사(강연회, 강습회, 경진대회, 역사·문화탐방 등)
-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

□ 향후 계획

- '11. 10월 입법예고, 관계자 의견수렴
- '11. 11월 위원회 의결 및 고시